

항고이유서

항 고 인 참 여 연 대

피항고인 음 성 직외 6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항고이유서

사 건 서울고등검찰청 2011고불항228호 업무상배임 및 입찰방해 등
항 고 인(고발인) 참 여 연 대

위 항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 변호사 권정순

피항고인(피고발인)1. 음 성 직(서울도시철도공사 대표이사)

2. 최 규 학(서울도시철도공사 전 디자인실장)
3. 조 두 진(서울도시철도공사 전 계약팀장(2009. 2. 3.자 인사))
4. 배 경 석(서울도시철도공사 전 계약팀장(2009. 6. 1.자 인사))
5. 홍 현 오(서울도시철도공사 고객홍보센터장)
6. 최 정 균(서울도시철도공사 대외협력팀장)
7. 이 덕 규(서울도시철도공사 차량연구팀장/차량기술단장)

위 사건에 대하여,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항 고 이 유

1. 수사검사의 각하처분의 부당성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검사는 '피고발인측 진술과 제출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해피존 사업 등은 공개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추진된 것으로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고발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 피의사실 및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발인 음성적이 고발인이 제기한 의혹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각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수사검사는 고발인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측¹⁾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무려 1천여쪽이 넘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아니라 도시철도공사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였다고 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 확인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각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각하처분의 본래 취지 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고발인은 이 사건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음성적을 특정한 이외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디자인실 및 계약 담당자', '입찰 및 계약 담당자'로 기재하였으나, 고발인 조사 당시 고발내용과 관련한 공사의 담당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을 뿐아니라(증제26호증의 1내지 4)²⁾ 각 참조) 이미 제출한 증제25호증의 1, 2에는 각 일자별 공사의 디자인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위 모든 사정을 차치하더라도, 고발장에는 고발인이 고발대상으로 삼은 세 가지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업무 담당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피존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고발장 3쪽 이하에는 '공사 디자인실 및 계약팀'이 위 사업의 주무부서였음을 명시하였는바, 고발장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으로

1) 수사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고발인측'의 진술을 근거로 각하처분에 이르렀다고 실시하면서도, 막상 '피고발인측'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전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위 자료를 제시하며, 음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한바 있습니다.

서는 마땅히 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의 공사 디자인실장 및 계약팀장 등을 확인하여 피고발인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를 각하처분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검사는 1천여쪽이 넘는 피고발인측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고발내용과 관련한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어떠한 범죄라도 범죄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목적의 피의자의 변명내용만을 근거로 삼는다면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이유서를 검토하면, 수사검사는 고발인의 고발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피고발인측의 진술을 덧붙이고 있는바, 사실상 피고발인측의 진술에 그대로 의존하여 이 사건 각하처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하처분이란 '고소장, 고발장의 기재 및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고³⁾ 내리는 중극처분'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그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즉,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각하처분을 한 것은 더욱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감사원에서는 이 사건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특수2부에 배당하였는바, 이 사건 각하처분의 부당성은 더 이상 살필 것도 없이 취소되어야 하며, 재기수사가 이루어져 고발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해피존 사업과 관련한 검사 판단의 부당성

3)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실에서는 고발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 담당자들을 소환하여 참고인 진술을 받고 있다고 확인하여 준비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하처분은 더욱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가. 불기소의 주된 이유

수사검사는, '146개 역사 내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전체 여유공간은 290,000m²로서 (주)에스케이스페이스가 제안한 231,871m²는 실현 불가능한 면적이 아니라, 전 역사를 동시에 개발할 경우 기존 입점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승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에스케이페이스(이하, 'SK페이스'라 한다)와 협의과정에서 1단계 개발면적을 61,407m²로 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2단계로 개발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해피존 사업관련 입찰절차에서 SK스페이스를 낙찰업체로 선정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하처분에 이르렀습니다.

나. (위 불기소이유에 대한)반박 요지

(1) 고발인이 고발장에서 지적한 주요 범죄사실은, 2009. 4. 23. 공사가 해피존 사업과 관련한 사업공고를 하기 전 사업공고의 내용을 정하면서, 공사 내부 담당자들은 이미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입찰조건 등을 제시한 정황이 있는바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공사 디자인실에서는 사업공고 전 제안면적의 하한선만을 제시하고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자유제안 형태로 하는 것으로 사업공모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계약팀에 통보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업공모 조건을 보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입찰참여자들은 당연히 개발가능한 면적을 가능한 한 많이 기재하여 낙찰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면적을 기재함에 있어 승객의 동선과 안전상의 측면을 포함한 개발가능성 등 현실적 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은 제외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제시한 개발면적은 그러한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SK페이스만이 사업제안서

4) 고발장 2~7쪽 참조

에는 다른 업체들보다 월등히 넓은 면적을 기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낙찰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이후 공사와 협의과정에서 면적을 축소하였다는 것⁵⁾으로, 이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주요 사유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입찰 전 사업공고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공사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상, 건축물 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면적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개발가능한 면적은 전체 면적의 일부에 불과할 것인데, 고발인의 위 주장과 같이 SK페이스가 다른 입찰참여업체와 달리 터무니없는 면적을 기재하였고, 공사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입찰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것인지 여부는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지하철 역사를 실측하게 한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공사는, SK페이스가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넓게 기재한 개발면적을 근거로 가격평가 300점 만점에 300점을 취하게 하고, 가격평가는 상대평가라는 맹점을 악용하여 타사는 20~60점대로 떨어뜨려 SK페이스를 제외한 4개사를 총점 700점이하로 떨어뜨려 부적격처리하고 SK페이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는바, 이는 공사측 담당자와 SK페이스의 사전공모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 중 상위 2개 업체인 SK페이스컨소시엄과 GS리테일은 각각 총점 804.9점과 669.9점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평가 점수가 낮은 SK페이스컨소시엄은 주관적 평가와 가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각 항목의 평가결과⁶⁾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이에 대해, 피고발인측은 1차 개발과 2차 개발로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공사가 위와 같이 순차개발을 염두에 두었다면 사업공고시 이를 명시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에게도 면적 기재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할 것인데, 공사는 에스케이페이스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위 업체와 개발면적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없었다면 불가능한 상황이라할 것입니다.

6) 위 자료는 공사 내부자료인 '해피존 사업 개발사업자 선정 사업제안서 평가결과'로, 수사절차를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업체	총점	주관적평가	객관적평가	가격평가
SK페이스	804.9	442.6	62.3	300
GS리테일	669.9	398.0	216.0	55.9
SPC	491.2	377.5	89.9	23.8
해피존 추진위원회	419.4	336.9	12.7	69.8
우진INS	401.0	340.7	37.6	22.7

그러나, 공사가 낙찰자 선정 후 SK페이스컨소시엄의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 면적을 축소하고 기본보장금을 조정한 사정을 반영한 평가의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이후			
	총점	주관적	객관적	가격	총점	주관적	객관적	가격
SK 페이스	804.9	442.6	62.3	300	804.9	442.6	62.3	300
GS 리테일	669.9	398.0	216.0	55.9	803.51	398.0	216.0	189.51

그 밖에도, SK페이스가 개발면적을 공사와 협상하여 축소한 면적으로 기재하였다면, 주관적 평가 지표인 사업공간 개발의 적정성에 대한 점수도 당초와 달라질 수 있는 등 총점에서 GS리테일이 더 높았을 개연성마저 존재할 뿐아니라, GS리테일이 총점 70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일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면적과 기본 보장금이 조정되었을 때 SK페이스 이외 차점 업체인 GS리테일 또한 700점 이상이 되어 협상대상자가 되고 경우에 따라 최고 득점 업체가 될 수 있음에도 개발면적과 기본보장금을 비현실적으로 제안하고 그대로 평가에 반영하여 특정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명백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에 SK페이스 관계자와 공사 내부 관계자(특히, 전 디자인실장인 최규학)의 사전모의 가능성 및 금품수수의 개연성이 높다할 것인바, 이에 대

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공사는 SK페이스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3회에 걸쳐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을 유예해 주었는바, 이는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발인측은 'SK페이스는 2009. 8. 3. 입찰보증금 740억원 중 현금 150억원과 당좌수표 590억원을 납부하면서 당좌수표 해당액은 지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위 요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유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서울시의 감사로 해피존 사업을 중단하면서 SK페이스 컨소시엄과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 소송(현재는 항소심 진행 중인데,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0나54407호)에서, SK페이스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발인은 위 소송의 소송기록을 열람하기 어려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피고발인들로 하여금 위 소송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위와 같은 주장의 진위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보증금 미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SK페이스의 요청에 따라 사업을 지연시킨 것은 입찰절차를 전후하여 공사 관계자들과 SK페이스와의 치밀한 공모나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로써 공사 관계자들은 SK페이스에 재산상 이익을 발생시켰다할 것입니다.

3. 스마트물 사업과 관련한 검사 판단의 부당성

가. 불기소의 주된 이유

검사는, 스마트물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주)퍼프콤 컨소시엄(이하, '퍼프콤'이라 한다)은 사업의 성격상 대규모의 선투자를 부담해야 할 뿐아니라 일시 부담해야 하는

계약보증금과 지급이행보증금이 350억원에 달하는 관계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공사 내부 대책회의를 거쳐 현금 대신 공증 지급각서를 받기로 했으며, 공사의 광고물등관리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보증금 및 지급이행보증금은 공사 광고물등관리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지급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및 퍼프컴이 당초 약정과 달리 10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40억원의 자본금만 출자한 것은 사실이나 납입 자본금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임의적인 약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습니다.

나. (위 불기소 이유에 대한)반박 요지

(1)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사업제안요청서(증제6호증) 'Ⅱ.3. 입찰참가보증금 가.항'에서는 '사업신청자는 계약체결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참가 신청일에 사업기간(10년) 동안의 사용료(기본보장금)에 해당하는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열거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요청서 11쪽), 'Ⅲ. 2. 나.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10년 동안 총 기본보장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과 수익사업에 대한 사용료의 적기 납부, 계약상 채무의 지급보증 등을 위하여 사업기간 10년 동안 총 기본보장금의 15%에 해당하는 지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우리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위 요청서 18쪽). 그러나, 공사는 낙찰자로 선정된 퍼프컴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뚜렷한 이유없이 14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면제하고(현금지급각서로 대체)하고, 210억원의 지급보증금은 2009. 8.까지 40억원을 유예하여 주고 50억원은 이행보증증

권으로 받은 후 나머지는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것(증제9호증 - 10조 참조)이 고발인의 주요 고발내용이었습니다.⁷⁾ 공사의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해 퍼프컴은 수 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치로 공사에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공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퍼프컴에게 특혜를 부여한 조치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발인 음성직을 비롯한 공사관계자가 퍼프컴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특혜적인 조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고발인측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 내부 대책회의를 통해 계약보증금과 지급이행보증금을 현금 대신 공중각서를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2) 이에 대해, 피고발인측은 공사의 '광고물등관리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나, 이미 위에서 살핀 사업제안요청서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 신청자에게는 입찰참가보증금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이행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부과한 이상 공사로서는 '광고물등관리 규정'과 무관하게 입찰참여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금원 지급이 지체되면 사업요청서 각 기재에 따라 불이익을 부여하면 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스마트플 사업제안요청서에서 이미 명시한 위 내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광고물등관리 규정 운운하며, 퍼프컴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입찰절차에서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규율은 당해 사업에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제안요청서인바, 공사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위 요청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퍼프컴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7) 고발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2010. 9. 15. 증거자료 제출시 제출취지를 설명한 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증제21호증 참조)

(3) 다음으로, 퍼프컴의 자본금 납부 의무 미이행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에드몰 사업은 BTL사업으로 사업이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의 자본금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며 법인의 자본금이 약정된 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스마트에드몰 사업은 2,000억에 달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이 최소한 사업이 가능한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 진행의 관건적 문제였고 이 같은 이유로 계약에서 자본금 출자 100억원을 명시한 것입니다. 공사가 부당하게 퍼프컴에 60억의 자본금 출자를 유예해 줌으로서 퍼프컴은, 최소한 연간 2억 4천만원(시중 정기적금 4%)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피고발인측은 검찰 조사에서는 자본금 유예에 대해 임의약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주)스마트채널⁸⁾쪽에 지속적으로 자본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은 공사와 (주)스마트채널이 주고 받은 공문과 관계 당사자들을 조사해 보면 분명해 질 것인데, 공사 역시 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자본금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에 (주)스마트채널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발인측의 위 주장과는 모순됩니다. 위와 같이, 공사가 퍼프컴에 거듭하여 특혜적인 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공사 관계자와 퍼프컴과의 유착관계에 따른 것으로, 양 당사자들 사이의 금전수수의 개연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피고발인들의 뇌물죄 의혹도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자본금 유예의 문제는 감사원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고 하는바,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8) 퍼프컴이 본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4. 결론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검사의 수사는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밝혀줄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발인측의 진술만을 근거로 각하처분에 이르렀으나, 본 건의 고발장에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사안은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 고발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각하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각하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고이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피고발인측의 진술에 비추어보더라도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할 것이므로, 재기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 | | |
|--------------|----------------------------|
| 1. 증제26호증의 1 | 서울도시철도공사 신사업 주요 관계자 |
| 1. 2 | 서울도시철도공사 신사업 진행 흐름(해피존) |
| 1. 3 | 서울도시철도공사 신사업 진행 흐름(스마트에드몰) |
| 1. 4 | 서울도시철도공사 신사업 진행 흐름(전동차 제작) |

2011. 1. .

위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권 정 순

서울고등검찰청 귀중